## 초등과정 학생생활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규정은 '한동글로벌학교 초등과정 학생생활규정'이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초등과정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, 세계관, 소명을 정립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

제 3 조(기본 예절) ① 학생은 "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"는 성경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- ② 학생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.
- ③ 학생은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학생 상호간의 관계보다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, 다양하고 열린 상호간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학생 생활

## 제1절 교내생활

제 4 조(수업) ① 학생은 수업 시간을 지켜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로 수업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 담당교사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은 보건실 사용으로 수업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실 입실 확인증을 받아수업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조(수업 외 시간) ① 학생은 실내외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

-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학생은 실내외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.
- ③ 학생은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.
- 제 6조(조퇴 및 결과)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조퇴 및 결과를 할 수 없다.
- 제 7조(보건실) ① 학생은 수업시간 중 응급상황이 아닌 한 보건실 이용을 자제하며, 점심시간 또는 쉬는시간에 보건실을 이용한다.
- ② 학생이 수업 중 아프거나 다친 경우 수업 담당교사의 보건실 입실 허가증을 받아 보건실을 이용하도록 한다.
- ③ 요양은 보건교사 판단으로 필요 시 1 일 2 시간 이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그 이상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귀가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.
- ④ 학생은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다.
- (5) 학생은 보건실 이용 시 보건교사의 지시와 보건실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.
  - 제 8 조(소유물에 대한 존중)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  -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, 은닉,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- 제 9 조(시설이용 및 환경)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, 학교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  -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,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하여야 한다.
  -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④ 학생이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, 은닉,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-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 10 조(외부행사) 학생은 학교 현장학습 등 외부행사에서 한동글로벌학교의 일반규정 및 교사들이 행사 상황에 맞추어 제공하는 지시에 따른다.

제 11 조(안전)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.

② 학생은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.

제 12 조(학교폭력)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.

제 13 조(이성교제) ① 학생은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. 이는 학생의 감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동성간에 건전하고 성결한 친구관계를 맺게 하고자 함에 있다.

② 학생은 특정 학생과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며, 이는 온라인상쪽지, 카톡, 문자 등을 포함하다.

### 제 2 절 용의 복장

제 14 조(목적) 용의 복장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용의와 복장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품위와 안전을 유지하고 건전한 교풍을 진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5조(용의) ①두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두발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여야 한다.
- 2. 염색, 파마, 삭발을 하지 않는다. 다만, 예외적인 경우 디렉터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다.
- 3. 남학생 두발은 앞머리는 눈썹, 옆머리는 턱선, 뒷머리는 어깨보다 위여야 한다.
- 4. 여학생은 얼굴을 덮는 헤어스타일이나 헤어롤의 착용을 하지 않는다.
- ② 화장은 하지 않는다.
- ③ 손톱은 짧고 단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.
- ④ 신체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.

제 16 조(복장) ① 학생은 등교 시 지정복 또는 자유복을 입는다.

- ② 지정복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
- ③ 자유복이란 지정복이 아닌 복장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의 의복은 금지한다.
- 1. 지나치게 몸에 꽉 끼는 의복
- 2. 찢어지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
- 3. 무릎에서 5cm 이상 올라가는 반바지 또는 치마
- 4. 술, 담배, 마약을 권장하거나 욕설 또는 성적인 암시가 있는 의복
- 5. 정치적 선동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한 의복
- 6. 기타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의복
- ④ 체육 수업이 있는 날에는 별표 2 체육복 기준에 따른 체육복과 운동화를 착용한다. 다만, 예외적인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체육에 적합한 다른 옷을 착용할 수 있다.
- ⑤ 아래 각 호의 신발은 금지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고 신을 수있다.
  - 1. 슬리퍼, 플립플랍 등 발끝이 트인 신발
  - 2. 굽이 높은 신발
  - 3. 축구화 등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
  - 4. 바퀴 달린 신발
  - 5. 기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신발
  - ⑥ 장신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본교 교육정신에 부합하는 단정한 장신구를 허용한다.
  - 2. 피어싱은 금한다.
  - 3. 귀걸이는 스터드형 귀걸이만 허용되며, 안전상의 이유로 링 귀걸이 및 드롭 귀걸이는 금한다.
  - 4. 학교 건물 내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다. 다만, 예외적인 경우 담임 교사의 허락 하에 쓸수 있다.
  - 5. 학습 집중력과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장신구를 하지 않는다.
  - 6. 색이 있는 안경 및 서클렌즈는 착용하지 않는다. 다만, 예외적인 경우 담임 교사의 허락하에 착용할 수 있다.

제 17조(공식 복장) ① 공식 복장이란 다음 각 호를 뜻한다.

- 1. 상의는 지정복을 입는다.
- 2. 신발은 구두, 단화, 운동화를 신어야 하며, 샌들과 슬리퍼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② 공식 복장은 채플, 개학식, 입학식, 종업식, 졸업식 등 공식 행사가 있는 날에 입어야한다.

#### 제3절 교외생활

제 18 조(교외생활)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학교의 교직원 또는 상급생, 동급생,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.
- 2.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.
- 3. 술, 담배, 본드,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- 4.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.
- 5.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- 6. 등하교 시 자전거, 오토바이,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제 19 조(보호자의 의무)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건전한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.

- 1. 외출 및 귀가시간
- 2.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
- 3.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
- 4. 청소년유해환경 및 미디어 접근

#### 제 4 절 정보 통신

- 제 20 조(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) ① 학생은 비도덕성, 도박성, 폭력성, 음란성 등 유해성이 있는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다.
- ② 학생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며,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제 21 조(전자기기 사용) ① 학생은 학교 교정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방과 전후 연락의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등교하는 시간부터 일과가 마칠 때까지 전자기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한다.
- ③ 학생이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할 시 담임교사가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한다.
- ④ 담임교사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전자기기를 직접 보호자에게 전달한다. 첫 번째 위반 시 일 주일, 두 번째 위반 시 이 주일, 세 번째 위반 시 남은 학기동안 전자기기를 교내에 반입할 수 없다.
- ⑤ 수업, 학교 행사, 급한 연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은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초등 선도위원회 및 초등 생활교육위원회

- 제 22 조(초등 선도위원회)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초등 선도위원회(이하 "선도위원회")를 둔다.
- ② 선도위원회는 교감, 디렉터, 담임교사, 생활지도교사를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, 담임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렉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담임교사 부재시에는 생활지도교사가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선도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⑤ 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 및 제청하고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.

제 23 조(초등 생활교육위원회) ① 학생의 훈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초등 생활교육위원회(이하 "생활교육위원회")를 둔다.

-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디렉터, 담임교사, 생활지도교사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디렉터가 위원장이 되고, 담임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.

### 제 4 장 훈 육

제 24 조(목적) 훈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5 조(훈육 절차) ① 단계별 훈육절차 기준은 [별표 3]에 따른다.

② 별표 3 의 3 단계 훈육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을 지속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
## 제5장 징 계

제 26 조(목적) 징계는 우리학교의 교육사명에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좋은 습관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7 조(징계 원칙)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
- 1.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- 2.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.
- 3.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.
- 4.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, 징계 기준,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5.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기회의 보장,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28 조(징계의 종류 및 방법 등) 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- 1. 학교내의 봉사
- 2. 사회봉사
- 3. 특별교육이수
- 4. 1 회 10 일 이내, 연간 30 일 이내의 출석정지
- ② 학교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학생이 등교하여 학생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.
- 1. 학교 환경미화 작업, 학교 환경정비 작업
- 2. 교재·교구 정비
- 3.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
- ③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 학생이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되어 봉사활동을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교내에서 운영하는 교내봉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특별교육이수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 등에 위탁되어 교육을 이수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교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출석정지 기간에 보호자의 책임하에 생활교육을 실시하며, 이때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다.
- ⑥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2 회 이상 받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①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⑧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3 호까지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고, 제 1 항 제 4 호의 출석정지 및 제 8 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
제 29 조(기준) ① 학생의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5 에 따른다.

② 선도위원회는 적합한 징계 조치를 선정하기 위해 별표 6 에 따라 판정 점수에 의거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한다.

- 제 30 조(절차)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학교의 장은 선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종류 및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한다.
  - 2. 징계 종류 및 방법 등이 결정되면 디렉터는 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별지 1 징계 조치 통지서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고, 유선상으로 보호자에게 절차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한다.
  - 3. 징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2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재심청구는 1 회로 제한한다.
  - 4. 선도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디렉터는 별지 3 재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  - 5. 선도위원회는 결정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.
  - 6.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의 제청으로 징계를 경감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- 7. 학교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의 제청으로 징계를 가중 조정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8. 징계 종료 전 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10 서약서를 디렉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9. 징계 종료 후 디렉터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의 종료를 통보한다.

## 제 6 장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

제 31 조(규정 개정)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 제청을 통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
제 32 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
#### 제 7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#### 제 33 조(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- ①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제 8 조 제 4 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즉시성이 요구되는 경우 공개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- ②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 12 조 제 6 항에 따라 수업 시간 중 교실 밖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[별표 7]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.
- ③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 12 조 제 9 항에 따라 [별표 8]와 같이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#### 제 34 조(상담)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,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,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진로전담교사,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,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.
-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학교의 장과 교원,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,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1. 사전에 목적, 일시,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
  - 2.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
  - 3.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
- (7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

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.

8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 부칙

- 1. 본 개정 규정은 202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→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】

## [별표 1] 지정복 기준

	구분	사양 및 디자인	비고
하복	셔츠	<ul><li>● 카라티셔츠</li><li>● 색상 : 그린</li></ul>	

	맨투맨	<ul><li>● 맨투맨</li><li>● 색상 : 그린</li></ul>
<b>老</b> 子早	予二	변기술 (15년 본색) 가로기준 : 5cm 기모후드집업 ● 기모후드집업 ● 색상 : 그레이 (모자 안감, 모자 스트링 곤색) ● 소재 : 면 80%, 폴리에스테르 20% 위 디자인을 삭제하고, 글로 VAGUE 하게 표현

# [별표 2] 체육복 기준

구분	사양 및 디자인	비고
----	----------	----

상의	한 등 글로벌 학교 (1도/환색) 가로기준 : 5cm
반바지	### ### #############################

한의 기간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되었다. 4cm 의 제육복 긴바지 의 색상 : 곤색 의 소재 : 쿨론 100%

# [별표 3] 훈육 단계

단	위반내용	훈육 조치
계		
1	<ul> <li>다음 사항에서 3회 이상 위반</li> <li>학급 규칙 위반</li> <li>교사의 교육적 지도 불이행</li> <li>아래 각 사항 위반 시</li> <li>거짓말</li> <li>다른 이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</li> <li>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</li> <li>피어싱 기준 위반</li> <li>슬리퍼, 플립플랍 등 발끝이 트인 신발, 굽이 높은 신발, 축구화 등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, 바퀴 달린 신발, 기타 안전상의 위험이</li> </ul>	• 담임교사의 학급 규칙에 의거한 생활지도

	All shales A	
	있는 신발 착용	
	- 단정하지 않은 복장 착용	
	- 공식행사 복장 위반	
	- 과도한 장신구 착용	
	- 색조 화장	
	- 네일 아트	
	- 학교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낙서를 한	
	행위	
	- 타인의 물건이나 계정 무단 사용	
2	• 1 단계 3 회 위반 시	• 담임교사의 학급 규칙에
	• 아래 각 사항 위반 시	의거한 생활지도
	- 욕설	●담임교사가 학생
	-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창피를 주는 등	보호자에게 연락 및 위반
	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	내용 안내
		●학생 및 보호자는
		행동개선을 위한
		실천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
		제출함
3	• 2 단계 3 회 위반 시	●담임교사와 학생보호자
	• 아래 각 사항 위반 시	면담
	-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동조 또는 방조	•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
	– 일과 중 무단 이탈	훈육 조치 결정
	- 이성교제 규정 위반	• 담임교사가
	- 이성교세 규정 위반 - 문신	생활교육위원회의
		결정사항을 학생 보호자에게
	- 교내의 출입금지 시간 무단 위반	통보

※위반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및 상기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

# [별표 4] 징계기준

구분	위반 행위 내용	학교 내의 봉사	사 회 봉 사	특별 교육이수	출 석 정 지
	학교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	0	0		
	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	0	0	0	0
	욕설, 폭언, 폭력 등으로 교권을 심하게 모독한 경우	0	0	0	0
준법	공공문서를 위조·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	0	0	0	0
	경찰서나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거나 석방된 경우	0	0	0	0
	형법상 유죄를 받은 경우				0
	불온문서를 반입, 은닉, 탐독, 제작, 게시 또는 유포한 경우	0	0	0	0
	품행이 몹시 불량한 경우	0	0	0	0

언행 및 용의 복장	과도한 언행 및 용의복장 불량으로 인해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	0	0			
	수업이나 타인의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	0	0	0	0	
	교육활동(수업, 고사, 행사 등)을 무단으로 거부한 경우	0	0			
교육 활동	교육활동(수업, 고사, 행사 등)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경우			0		
	2 회 이상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또는 방조한 경우	등)을 무단으로 거부한 O O 등) 거부를 주동하거나 O O 나 이에 동조 또는 O O 근제를 사전에 O O O 일수 이하로 O O O				
	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절취한 경우	0	0	0	0	
	2 회 이상 무단 이탈	0	0			
출결	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수업일수 이하로 무단결석을 한 경우	0	0	0		
	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수업일수를 넘겨 무단결석을 한 경우				0	
	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	0	0	0	0	
음주 약물	술을 소지하거나 마신 경우	0	0	0	0	
寸屯	마약, 본드,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경우			0	0	
	도박을 한 경우	0	0	0	0	
퇴폐 행위	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경우	0	0	0	0	

절도	금품을 훔친 경우	0	0	0	0
	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경우	0	0	0	0
집단 행위	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경우	0	0	0	0
	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경우	0	0	0	0
	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경우	0	0	0	0
	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·거래·배포한 경우	0	0	0	0
정보 통신	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 및 배포한 경우	0	0	0	0
	반사회적, 반인륜적 사이트(자살, 테러, 폭력, 불법거래, 음란물,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)에 대해 가입·개설·운영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해친 경우	0	0	0	0
이성 교제	이성교제 규정 2 회 이상 위반	0	0		
기타	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경우	0	0		
※위반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및 상기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					

※위반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및 상기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

# [별표 6] 징계 조치 판단 기준

		기본 판단 요소						
		규정 위반 행동의 심각성	규정 위반 행동의 지속성	규정 위반 행동의 고의성	규정 위반 학생의 반성 정도			
	4	매우 높음	매우 높음	매우 높음	없음			
	3	높음	높음	높음	낮음			
판정 점수	2	보통	보통	보통	보통			
	1	낮음	낮음	낮음	높음			
	0	없음	없음	없음	매우 높음			
훈육 <b>3</b> 단계 처리								
징계조치	학교 내의 봉사	1 점 ~ 5 점						
사회봉사 6점~9점								
	특별교육 이수	10 점 ~ 13 점						
	출석정지		14 점 ·	~ 16 점				

※판정점수 평가는 선도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아닌 각 판단요소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 선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판정 점수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할 수 있다.

# [별표 7]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제 12 조제 6 항의 제 3 호 및 제 4 호 관련

생활지도		요건	분리장소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교내수업 시간 중	가	방과후수업을 포함 한 정규 수업시간 중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지도 · 감독 할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
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나	'가'에 따른 지 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무실, 교장실, 상담실 등 교감지정 장소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지정 장소로 이동	교과서요약, 행동성찰문 쓰기, 경필쓰기 등 과제 및 태도
교내수업 이외의	가	현장학습, 교외수 업, 수학여행 등에 서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따로 지도 · 감독할 수 있는 교원과 함께 분리조치	주의를 준 후 실시	개선을 위한 대안 행동 부여
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나	'가'에 따른 지 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학생을 따로 지도 · 감독할 수 있는 교원과 함께 학교로 복귀	학부모에게 학교 복귀 시유를 통지함	

# [별표 8]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제 12 조제 9 항

# 관련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 혹은 교무실	□1회차: 주의 실시 □2회차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□3회차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□수업 종료 후 : 되돌려줌
2	전자기기 사용시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 혹은 교무실	□분리보관 사유를 알린 후 주의 없 이 즉시 분리보관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	교무실 등 학교장이	□분리보관 사유를 알린 후 주의 없이 즉시 분리보관 □학생으로부터 흉기,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□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3일	지정하는 장소	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줌  ※ 학부모가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경  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			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